

학 사 운 영 규 칙

제1조 (졸업자격)

- ① 충남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자율운항시스템공학과와 교육과정(교과목 및 학점)을 이수하고, 졸업논문, 전공 관련 전국대회 수상, 국가자격증 취득 중 1개 항목과 포트폴리오 발표 심사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한다.
- ② 졸업예정자는 학과에서 정한 기일 내에 상기 졸업자격 항목을 선택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③ 학·석 연계과정 학생과 조기졸업대상자는 졸업예정자와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.

제2조 (심사기준)

(1) 졸업논문

- ① 졸업예정자는 충남대학교 학칙 제 68 조(졸업논문)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.
- ② 졸업논문은 개인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, 6 학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7 학기 시작 전에 학사 일정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한다.
- ③ 대상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논문작성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, 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한다.
- ④ 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. 불합격자는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(2) 전공 관련 전국대회 수상

- ① 졸업 전 전공 관련 전국대회(대한조선학회 주관 전국대회인 학생선박설계컨테스트,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, KTTC 실험유체역학컨테스트 및 특허유니버시아드, IMO 모의총회 등)에서 입상 이상을 수상으로 인정한다.

- ② 상기 항에서 정한 이외의 전국대회 입상 실적의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
(3) 국가자격증 취득

- ① 국가자격증은 입학 후 취득한 전공 관련 기사자격증(조선기사, 용접기사, 기계기사)에 대해서 인정한다.
- ② 상기 항에서 정한 기사자격증 이외 자격증의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
(4) 포트폴리오 발표

- ① 졸업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내용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지정된 일정 및 절차에 따라 발표 심사를 받아야 한다.

- 부 칙 -

제1조 본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